학 교 법 인 명 지 학 원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명	2명
재적임원	5명	0명
참석임원	5명	0명

1. 회의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4월 20일(수)]

2. 회의장소 :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개최 [ZOOM - 898 6893 5834]

3. 참석임원 현황

□ 이사(5명) : 현세용, 최성규, 이재훈, 유병진, 민형준

※ 배석 교직원

- 법인 : 사무국장 유재훈, ~~총무부장~~ 김하영, 재정팀장 봉하민, ~~총무부~~ 김현동

4. 심의안건

가.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 통합추진 계획(안)~~ - 상정취소

나.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 변경

다. 각급학교 교직원 인사

라.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자금(세입·세출)계산(결산)서(안) 승인

마. 2022학년도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 상정취소

사.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증자보고

아.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자보고

자. 명지대학교교회 규정 변경

5. 보고사항

가. 2021학년도 각급학교 세입세출 간주처리 추가경정 예산 보고

나.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결과보고

다. 명지전문대학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및 특성화계획 보고

라. 각급학교 주요업무보고

6. 성원보고 및 개회

2022년도 제3차 이사회가 학원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등)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 후 이재훈 이사의 기도에 이어 의장이 금번 이사회는 COVID-19 감염 예방차원에서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함을 안내하고, 학원발전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과 함께 개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이 재훈	유 병진	민 형준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 통합추진 계획(안)

의 장 : 우리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의 통합 추진계획(안)은 추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므로, 금번 안건상정에서 취소하다.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 변경

의 장 :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 변경에 대하여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9조(보직) ① (생 략) ②대학교의 부총장은 교수로 대학원장,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가 아닌 교원을 부총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실·처장(부실·처장 포함), 대학원 교학처장, 사회봉사단장 및 대외협력·홍보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체진단평가단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단,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조정실장, 사무(지원)처장 및 부실·처장은 일반직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내신하여 이사장이 보임한다. ⑪대학교수의 보직연한은 다음과 같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학내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임용할 수 있다. 부총장 : 2년 대학원장 : 2년 단과대학학장 : 2년 행정실·처(과)장, 대학원 교학처장, 사회봉사단장, 대외협력·홍보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문캠퍼스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학술연구진흥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자체진단평가단장 및 부단장 : 2년 도서·박물관장 : 2년 학부(과)장 : 2년 기타 행정보직 : 2년 ⑫ (생 략)	제9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학교의 부총장은 교수로 대학원장,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가 아닌 교원을 부총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실·처장(부실·처장 포함), 대학원 교학처장, 사회봉사단장 및 대외협력·홍보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체진단평가단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단,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조정실장, 사무(지원)처장 및 부실·처장은 일반직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내신하여 이사장이 보임한다. ⑪대학교수의 보직연한은 다음과 같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학내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임용할 수 있다. 부총장 : 2년 대학원장 : 2년 단과대학학장 : 2년 행정실·처(과)장, 대학원 교학처장, 사회봉사단장, 대외협력·홍보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문캠퍼스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학술연구진흥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자체진단평가단장 및 부단장~~ : 2년 도서·박물관장 : 2년 학부(과)장 : 2년 기타 행정보직 : 2년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삭제 내용삭제

간서명	이재훈	유병진	민형준

유병진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최성규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의 장 :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 변경에 관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3) 각급학교 교직원 인사

의 장 : 각급학교 교직원 인사에 관한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가. 명지대학교

○ 직원 보직 : 3명

연번	보 직 명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비 고
1	법무감사팀장	4급(참사)	김남철	2022.05.01.	
2	진단평가팀장	4급(참사)	김찬우	2022.05.01.	
3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	4급(참사)	박두홍	2022.05.01.	

○ 직원 신규임용 : 2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발령일자	비 고
1	김진우	1991.07.04.	9급(부주사)시보	2022.05.01.	임용일로부터 6개월
2	김다은	1992.06.01.	9급(부서기)시보	2022.05.01.	임용일로부터 6개월

나. 명지전문대학

○ 직원 보직 : 2명

보 직 명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비 고
성과관리센터팀장	5급(부참사)	유용한	2022.05.01.	겸 직
한국어교육센터팀장	5급(부참사)	박해원	2022.06.01.	겸 직

○ 직원 신규임용 : 1명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발령일자	비 고
민아림	1991.10.25.	9급(부서기)시보	2022.05.01.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직원 면직 : 1명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사 유	발령일자
학사지원팀	6급(주사)	성지희	의원면직	2022.04.01.

이재훈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민형준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의 장 : 각급학교 교직원 인사에 관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4)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자금(세입·세출)계산(결산)서(안) 승인

의 장 :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자금(세입·세출)계산(결산)서(안) 승인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법인 재정팀장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재정팀장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3조(결산)와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규정에 의거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자금(세입·세출)계산(결산)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 장 :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자금(세입·세출)계산(결산)서(안) 승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1) 2021학년도 법인 자금계산서(안)

2) 2021학년도 수익사업 자금계산서(안)

3) 2021학년도 법인 대차대조표(2022.02.28. 현재) 및 운영계산서(2021.03.01.- 2022.02.28.)(안)

간서명	이재훈	유병진	민형준

4) 제46기 수익사업 결산서(안)
5) 2021학년도 합산자금계산서(법인,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안)
6) 2021학년도 합산대차대조표[법인,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2022.02.28.현재)] 및 합산 운영계산서[법인,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학(2021.03.01. - 2022.02.28.)](안)
7)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자금계산서(안), 대차대조표(2022.02.28.현재) 및 운영계산서(2021.03.01.-2022.02.28.)(안)
8) 2021학년도 명지전문대학 자금계산서(안), 대차대조표(2022.02.28.현재) 및 운영계산서(2021.03.01.-2022.02.28.)(안)
9) 2021학년도 명지고등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서(안)
10) 2021학년도 명지중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서(안)
11) 2021학년도 명지초등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서(안)
12) 2021학년도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원비 세입·세출 결산서(안)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자금(세입·세출) 계산(결산)서(안) 총괄표

(2021.03.01. - 2022.02.28.) (단위 : 원)

기관명		세입	세출	차기이월액
법인	법인일반회계	1,590,294,843	1,588,001,345	2,293,498
	수익사업회계	-214,500,969,816	61,595,764,897	-276,096,734,713
법인계		**-212,910,674,973**	**63,183,766,242**	**-276,094,441,215**
대학	명지대학교	192,380,454,424	201,556,073,062	-9,175,618,638
	명지전문대학	78,851,845,884	77,353,163,713	1,498,682,171
대학계		**271,232,300,308**	**278,909,236,775**	**-7,676,936,467**
유·초·중·고	명지고등학교	13,529,185,323	12,070,092,246	1,459,093,077
	명지중학교	7,334,233,870	6,473,799,786	860,434,084
	명지초등학교	7,410,782,953	7,222,578,126	188,204,827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1,529,514,500	1,224,269,973	305,244,527
유·초·중·고 계		**29,803,716,646**	**26,990,740,131**	**2,812,976,515**
합계		**88,125,341,981**	**369,083,743,148**	**-280,958,401,167**

민형준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최성규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의 장 :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자금(세입·세출)계산(결산)서(안) 승인에 관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5) 2022학년도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의 장 : 2022학년도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2022학년도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추가경정 예산(안)

(2022.03.01. - 2023.02.28.) (단위 : 천원)

기관명	회계명	세입·세출			비고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명지전문대학부속 명지유치원	유치원회계	1,559,783	1,487,014	72,769	

이재훈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유병진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의 장 : 2022학년도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관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이재훈	유병진	민형준

6)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의 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132호에 의거하여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2)』에서 우리학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34번지 토지가 편입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련 감정평가작업이 시행되었으나, 관할청이 예정하였던 협의요청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번 상정안건에서 취소하다.

7)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증자보고

의 장 :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증자보고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증자재산 내역

증자재산	재 원	예치기관	예치금액(원)	예치기간	비 고
정기예금	공익사업 편입 손실보상금	KEB 하나은행	8,559,676,910	2021.12.30. -2022.06.30.	수익용기본재산 (수용관련 대체재산)
정기예금	지상권 설정 보상금	KEB 하나은행	545,120	2022.01.20. -2023.01.20.	수익용기본재산
계			8,560,222,030		

□ 재산편입 :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최성규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민형준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의 장 :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증자보고에 관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8)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자보고

의 장 :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자보고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증자재산 내역

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외 22필지

2) 건물현황

건물명	층 수	구 조	면 적		취득금액(원)	재 원	등기일자
			m^2	평			
교육복합시설	지하2층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	30,900.31	9,347.34	42,855,394,703	명지대학교 교비	2021.10.19.

나.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55

2) 건물현황

건물명	층 수	구 조	면 적		취득금액(원)	재 원	등기일자
			m^2	평			
건설인프라 연구동	지상2층	철골구조	479	145	687,200,000	지정기부금	2019.07.12.
하이브리드관 실험동A	지상1층	철골구조	246	74	259,500,000	지정기부금	2019.05.22.
하이브리드관 실험동B	지상1층	철골구조	152	46			
창조예술관	지하1층 지상8층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19,608	5,931	36,027,842,132	명지대학교 교비	2018.08.13.

다. 재산편입 : 명지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간서명	이재훈	육병진	민형준

민형준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최성규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의 장 :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자보고에 관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9) 명지대학교교회 규정 변경

의 장 : 명지대학교교회 규정 변경에 대하여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2020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의 조건부 승인사항을 제외하고, 당시 보류되었던 나머지 개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법인 사무국장의 안건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9조(부목사) 1)부목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목회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 중에서 담임목사가 당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자를 명지학원 선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 3) (생략) 제13조(시무장로) 1) (생략) 2)시무장로의 선임과 장립은 당회에서 추천한 자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명지학원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장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 4) (생략) 5)시무장로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4조(협동장로) 1) (생략) 2)협동장로는 1년 이상 성실하게 협력한 자 중에서 당회가 추천한 자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명지학원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협동장로가 될 수 있다. 3)협동장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당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4)협동장로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5조(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은퇴할 때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안수집사) 1) (생략) 2)안수집사는 당회에서 추천한 자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명지학원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안수한다. 3) (생략) 4)안수집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8조(협동안수집사) 1) ~ 2) (생략) 3)협동안수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당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9조(부목사) ①부목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목회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 중에서 담임목사가 당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무장로) ① (현행과 같음) ②시무장로의 선임과 장립은 당회에서 추천한 자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당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장립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시무장로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4조(협동장로) ① (현행과 같음) ②협동장로는 1년 이상 성실하게 협력한 자 중에서 당회가 추천한 자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당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협동장로가 될 수 있다. ③협동장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협동장로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5조(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은퇴할 때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안수집사) ① (현행과 같음) ②안수집사는 당회에서 추천한 자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당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안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안수집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8조(협동안수집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협동안수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내용변경

간서명	이 개 준	유 배 진	민 형 준

현 행	개 정(안)	비 고
4)협동안수집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9조(은퇴안수집사) 안수집사가 65세가 되어 은퇴하면 은퇴안수집사로 칭한다. 제20조(권사) 1) ~ 3) (생략) 4)권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21조(협동권사) 1) ~ 2) (생략) 3)협동권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당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4)협동권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22조(은퇴권사) 권사가 65세가 되어 은퇴하면 은퇴권사로 칭한다. 제22조의2(명예권사) 1) (생략) 2)여자 서리집사로 7년 이상 봉사하고 65세 이상 된 자 중에서 당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직원) 1) (생략) 2)행정국장은 담임목사가 당회와 협의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생략) 4)사무직원, 관리집사, 기사는 담임목사가 당회와 협의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5)사무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정원은 매년 12월 말 당회가 출석 신자수와 기타 상황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산출 책정하여 법인 이사장에게 신청한다. 6)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당회의 조직) 1)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2) ~ 3) (생략) 제27조(당회의 직무) 1) ~ 5) (생략) <신 설> 제28조(당회소집)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당회 : 매월 마지막 주일 2. 임시당회 : 당회원 반수 이상의 발의 또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1조(공동의회) 1) (생략) 2)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2주일 동안 교회 현관 앞 게시판에 공고한다. 3) ~ 5) (생략) 6)공동의회 회의록은 명지학원선교위원회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32조(제직회) 1) ~ 2) (생략) 3)제직회의 개회는 2주일 전에 공고하고 출석한 회원 수로 개회한다.	④협동안수집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9조(은퇴안수집사) 안수집사가 70세가 되어 은퇴하면 은퇴안수집사로 칭한다. 제20조(권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권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21조(협동권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협동권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당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협동권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22조(은퇴권사) 권사가 70세가 되어 은퇴하면 은퇴권사로 칭한다. 제22조의2(명예권사) ① (현행과 같음) ②여자 서리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7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당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행정국장은 담임목사가 당회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사무직원, 관리집사, 기사는 담임목사가 당회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⑤사무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정원은 매년 12월 말 당회가 출석 신자수와 기타 상황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책정한다. ⑥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당회의 조직) ①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당회의 직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당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당회소집)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당회 : 매월 마지막 주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31조(공동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동안 교회 현관 앞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제32조(제직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직회의 개회는 1주일 전에 공고하고 출석한 회원 수로 개회한다.	내용변경 내용변경 항 신설 내용변경 항 삭제 내용변경

간서명	이 재 윤	유 병 진	민 형 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4조(예배) 1)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 행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4:24)고 하신 말씀을 따라 본 교회는 공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한 시간에 드린다. (1) ~ (4) (생략) <신 설> 2) ~ 3) (생략) 4)공예배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 (10) (생략) (11) 축도 제36조(회계) 본 교회의 회계는 명지대학교교회 회계로 독립 경리하되 그 예산과 결산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정관 및 관계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4조(예배) ①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 행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4:24)고 하신 말씀을 따라 본 교회는 공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한 시간에 드린다. 1. ~ 4. (현행과 같음) 5. 매일 새벽 예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예배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축복 제36조(회계) 본 교회의 회계는 명지대학교교회 회계로 독립 경리하되 그 예산과 결산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정관 및 관계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내용변경

유병진 이사 :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명지대학교 채플관 등을 명지대학교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은 바, 향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명지대학교교회 규정 및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므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을 제안하다.

이재훈 이사 : 제안대로 본 안건의 부결을 제안하자 민형준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부결되다.

의 장 : 명지대학교교회 규정 변경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나. 보고사항

☐ **2021학년도 각급학교 세입·세출 간주처리 추가경정 예산 보고**

의 장 : 2021학년도 각급학교 세입·세출 간주처리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 의장의 요청으로 보고사항을 설명하다.

2021학년도 각급학교 세입·세출 간주처리 추가경정예산 총괄표

(2021.03.01. - 2022.02.28.)

(단위 :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명 지 고 등 학 교	학 교 회 계	12,340,733	12,389,731	-48,998
명 지 중 학 교	학 교 회 계	7,195,964	7,085,413	110,551
명 지 초 등 학 교	학 교 회 계	7,404,549	7,378,796	25,753
합 계		26,941,246	26,853,940	87,306

☐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결과보고**

☐ **명지전문대학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및 특성화계획 보고**

☐ **각급학교 주요업무보고**

7. 간서명 대표 임원 호선

의 장 :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을 호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간서명	이 재 훈	유 병 진	민 형 준

최성규 이사 :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이재훈 이사, 유병진 이사, 민형준 이사를 호선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찬성하다.

의 장 :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이재훈 이사, 유병진 이사, 민형준 이사가 호선되었음을 선포하다.

8. 폐 회

의 장 : 금일 심의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1시 47분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4월 28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현 세 용 현세용

이 사 최 성 규

〃 이 재 훈 이재훈

〃 유 병 진 유병진

〃 민 형 준 민형준

간서명	이재훈	유병진	민형준